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5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정필모·강선우·김경만

김성주 · 김승원 · 김원이

김정호・김주영・노웅래

송옥주 • 윤건영 • 이수진

임호선 · 정일영 · 주철현

황운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 항).

법률 제 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총괄하여"를 "반기별로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②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	
과를 <u>총괄하여</u> 국회 소관 상임	반기별로 총괄하여 매 반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료 후 30일 이내에